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 목적에 ‘평화적’ 원자력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 내용 추가〉

■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43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 목적에 ‘평화적’ 원자력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 내용 추가 (안 제1조)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유용원의원 등 12인

나. 제출일자 : 2024. 7. 1.

다. 회부연월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Ⅲ. 검토의견

1. 법 목적에 ‘평화적’ 원자력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 내용 추가(안 제1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 목적에 ‘평화적’ 원자력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평화적 연구</u> ----- ----- ----- ----- ----- ----- <u>인류사회의 복지증진</u> ----- -----.

나. 검토의견

☐ 법 목적에 ‘평화적’ 원자력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 내용 추가

현행법 제1조는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법 목적 규정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를 명시한 적이 없음.

또한,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에는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나,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국민 복지증진’으로 축소하였음.

<「원자력 진흥법」 제1조(목적) 제·개정 현황>

원자력법 (1958., 제정)	원자력법 (1982., 전부개정)	원자력 진흥법 (2011., 전부개정/현행)
제1조 (목적) 본법은 <u>원자력의 연구</u> ,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u>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u>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u> (이하 “原子力利用”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u>복지증진에 기여</u> 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u> (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u>복지증진에 이바지</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는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 법의 목적에 ‘평화적’ 원자력이용과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학술적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위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재확인하려는 취지이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일본은 원자력 관련 법률인 「원자력기본법」(1955년 제정)에 원자력이용은 평화의 목적에 한하도록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함을 동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원자력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함)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꾀하며, 인류사회의 복지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 원자력이용은 평화의 목적에 한해 안전 확보를 취지로 하며, 민주적인 운영 하에 자주적으로 이를 이행함으로써, 그 성과를 공개, 나아가 국제

1) 2015년 6월 15일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이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연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적인 권리를 확보한 바 있음. 해당 협정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되면서, 양국 간의 구(舊) 원자력협정 체제가 완전히 종료되고 신(新) 협정체제가 효력을 갖게 됨.

협력에 이바지토록 한다.

② 전항의 안전 확보에 대해 확립된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의 보전 및 일본국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행토록 한다.

문 의 처

02)6788-5231